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6. 20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1. 6. 20

다. 상 정 일 자 : 제9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6. 25)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지원 등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한시기구가 2001. 6. 30일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내실 있는 정착, 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2. 12. 31일까지로 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
-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제2조)
- 동 기능전환 관련 자치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연장 승인(지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동 기능전환에 따라 이관된 사무,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 1일부터 2001. 6. 30일까지 구 본청에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등 기능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2. 12. 31일까지로 연장 운영키로 개선하였으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